

제16호
KIC ISSUE PAPER
2016년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윤 지 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I.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재조명 필요성 • 6

II.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 9

III. 환경범죄 관련 형사입법정책 제언 • 12

IV.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과학화 방안 • 15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요 약

■ 배경

- 범지구적 쟁점인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대응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은 대기오염 문제와 상관성이 있는바,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대기오염범죄를 포함한 환경범죄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상황임

■ 현황과 문제점

-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환경개념 자체의 포괄성·일반성·미완성 등으로 인하여 환경법규 수범자들의 규범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환경범죄는 그 침해가 간접적이고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법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고, 형사제재의 경우 개별 행정법에서 보충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 현행 입법방식은 형법전 규정방식에 비하여 일반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관련 규정들이 환경행정법규에 산재되어 있어서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즉, 환경범죄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그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이나 형벌규정의 행정종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해당 범죄는 형법전과 괴리된 채 전문적·기술적 해석을 통해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형사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것임
- 특정한 환경침해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도

출되는가 하면,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내하고 있는 오늘날, 형사사법 분야에서 환경범죄 대응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 요청됨

■ 입법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

- 환경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현재의 입법 방식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환경범죄 유형을 형법전에 편입시킴으로써 위하의 효과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환경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입법정책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우선 환경범죄의 수사 및 기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검찰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환경범죄 사건을 중점검찰청에 집중시키는 입법과 함께 관련 형사사건이 중점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 입법이 단행되어야 함
- 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경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점차 지능화·광역화되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고발이 활성화되어야 함
- 나아가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수익몰수제도를 확대하고 직업금지형을 도입하는 등 그 제재를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환경범죄의 수사 및 범죄성립 여부의 판단 과정에서 과학적 측정이 중요시되는바, 환경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먼저 환경범죄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수사체제를 일원화시킨 환경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하고, 중점검찰청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환경법원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개선해야 함

- 또한 이동식 측정망 구축이 가능하고 그 운용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드론을 환경사범 단속이나 수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환경범죄의 재판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을 통한 국외전문가 증언이 활성화되어야 함
- 나아가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환경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함과 아울러 첨단 모니터링 기술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임

I.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재조명 필요성

1. 기후변화 위기 시대 도래

■ 지구 안정성에 대한 적신호

- 2015년 1월 16일에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9개국 과학자 18명이 과학전문 주간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지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총 9개의 요소들 중에서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온전성, 산림면적 변화 및 생화학물질 생성 등 4가지의 지표가 이미 위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함

※ 지구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9가지 요소로는 기후변화, 생물종의 온전성(생물종의 유전적·기능적 다양성 평가), 성층권 오존 감소, 해양 산성화, 생화학물질 생성(부영양화를 유발시키는 인과 질소의 배출), 산림면적의 변화, 담수 사용, 대기 중 부유입자 농도, 신규 개체의 출현 등을 들고 있음

-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주도로 창설되어 70여 년 동안 활동 중인 미국의 핵과학자회(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BAS)는 2016년 1월 22일에 종래 자정 5분 전으로 맞춰져 있던 지구 종말의 시계(Doomsday Clock)를 자정 3분 전으로 앞당겼는데, 이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현재의 대응으로는 재앙에 가까운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바, 극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지구 종말의 시계는 냉전시대였던 1984년에 자정 5분전을 기록하였음

■ 기후변화 위기 고조

- 46억년 가량의 지구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기후 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하였는데, 종래 기후변화는 화

산분화나 태양 활동의 변화 및 자연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 등으로 인하여 서서히 전개되었음

-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이 증대하였고, 자동차나 난방시스템의 이용 등 변화된 인간의 생활양식은 탄소배출의 증가로 이어져 지구의 기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분석됨
-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양상은 종전과 비교할 때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2. 환경범죄 재조명의 필요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전략 모색 요청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1월 20일에 있었던 국정연설에서 기온 상승의 추이를 언급하면서 기후변화야말로 미래세대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목하였는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음
- 우리 정부도 범지구적인 쟁점인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형사사법 분야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

■ 형사사법 분야의 환경범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요구

-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은 대기오염문제와 상관성이 있고, 이에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대기오염범죄를 포함한 환경범죄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상황임
- 형사사법 분야에서 환경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에 논의가 일단락된 진부한 주제로 여겨져 왔으나 이는 관할권을 초월한 전 지구적 문제이며 미래 세대의 권익을 담보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함
- 과학기술의 발전은 종래 입증하지 못했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하는바, 특정한 환경침해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는가 하면,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내하고 있는 오늘날,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환경범죄 대응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II.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1. 현행 법체계 및 문제점

■ 환경범죄와 형사제재

- 환경범죄와 관련된 현행 법규 체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형법전에 따른 여러 범죄 유형 가운데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규정, 개별 환경관계법에 따른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 그리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임
- 그러나 환경범죄는 그 침해가 간접적이고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법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고, 형사제재의 경우 개별 행정법에서 보충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 50여 개의 환경행정법률 가운데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몇몇 법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칙의 장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은 징역형의 경우 7년, 벌금형의 경우 1억 원으로 파악됨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행 입법방식은 형법전 규정방식에 비하여 일반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관련 규정들이 환경행정법규에 산재되어 있어서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환경범죄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그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이나 형벌규정의 행정종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해당 범죄는 형법전과 괴리된 채 전문적·기술적 해석을 통해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형사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2. 주요국가의 대응 현황

■ 미 국

- 환경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상 처벌규정의 특이점이 강조되지는 않으나 전형적인 재산범죄나 허위표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환경범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환경사건 전담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바, 별도의 물적 기반을 조성하지 않고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춘 법원이 도입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한편 미국의 연방환경보호국(EPA)은 조직의 구성이나 인력선발 과정을 통해서 환경사건 단속 및 수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고, 환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됨

■ 독 일

- 독일은 환경범죄에 대한 규정을 형법전에 직접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종속적인 규정 형식으로 인하여 법집행 과정에서 결함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환경형법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그러나 환경범죄가 형법전에 규정됨으로써 국민들과 형사소추기관이 모두 그 규범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는데, 환경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고발 건수가 증가하였고, 환경범죄에 대해 내려진 유죄판결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한편 독일에서는 환경형법의 집행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협력모델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환경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수가 증대하면서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됨

■ 일 본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키고 있지 않는데, 주요 환경범죄는 특별환경법전에 규정하면서, 그 외의 환경범죄는 환경행정법에 규정하고 있음
- 이 방식에 대해서는 형법전 규정 방식에 비해 예방기능이나 위하력이 떨어지고,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산재되며 총론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일본에서는 환경형법체계가 국민정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윤리성이 강한 형법전에 환경범죄 처벌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최근에는 독립된 통일 환경법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중 국

- 중국은 1997년 형법전을 전면개정하면서 종래 다원화되었던 환경범죄 규정을 형법전에 통일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정하였음
- 이 시기의 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법인 등 조직적인 단위에 대한 환경범죄의 주체성이 인정되었고, 환경범죄의 처벌 행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그 처벌 수준도 강화되었는바, 그 입법 방향은 과학적·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법규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오염 배출기준을 초과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생산 제한 및 중지 조치는 물론이고 행정구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엄정한 제재가 마련된 것임
- 또한 각급 환경보호부서와公安기관과의 협력 기구 및 사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Ⅲ. 환경범죄 관련 형사입법정책 제언

1.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 필요성

-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환경개념 자체의 포괄성·일반성·미완성 등으로 인하여 환경법규 수범자들의 규범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행정종속적인 성격을 지니는 형벌규정이 개별 행정법규에 산재됨으로써 법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처벌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환경범죄 규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 단행

- 환경범죄에 대한 불법 정도와 처벌방식은 국가별 환경범죄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그 중요성에 대한 판단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각각의 규율 방식은 저마다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
- 환경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현재의 입법 방식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환경범죄 유형을 편입시키는 형법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위하의 효과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2. 환경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입법정책

■ 중점검찰청과 관할권 문제 선결

- 환경범죄의 수사 및 기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검찰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환경범죄 사건을 중점검찰청에 집중시키는 입법과 함께 관련 형사사건이 중점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함

■ 인과관계의 추정

- 환경범죄는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한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형법은 결과범에서 위험범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법익 보호의 전치화 내지 보편적 법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건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으로 인해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바,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과임
-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경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내부자고발 활성화

- 최근 환경범죄의 발생 양상이 점차 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현행 단속 및 수사 시스템만으로 사건을 적발하거나 수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고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데, 익명으로도 내부자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대폭 높이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음

■ 양형의 합리화

- 환경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그 처벌을 감수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임
- 환경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등 양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을 확보하면서 재범 예방에도 효과적인 범죄수익몰수제도를 확대하고 직업금지형을 도입하는 등 제재를 다원화시킬 것이 요청됨

IV.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과학화 방안

1.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

■ 환경범죄 전담 형사사법 조직의 구성

- 환경범죄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수사체제를 일원화한 환경범죄 수사 전담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환경범죄 단속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부는 법무부와 공조하여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을 발족시켰는데, 전국적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등 수사단의 발족은 진일보된 성과라고 평가되나, 향후 물적·인적 인프라가 보강되어야 함
- 또한 환경범죄는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건에 대한 기소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역량의 결집을 위해 중점검찰청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후변화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부과 등 다양한 이행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환경범죄는 물론이고 환경과 관련된 민사·행정·조세 분야 사건 및 환경 분야 국제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적 분쟁까지 해결할 수 있는 환경법원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정비

- 특수한 영역에서 법 위반 단속 및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소양과 그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요구됨

- 먼저 환경특별사법경찰이 환경사범 단속 및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 또한 환경사범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별도의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나 환경범죄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요청되는 과학적·기술적 지원과 법률적·정책적 자문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2.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과학화

■ 수사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 환경범죄의 경우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범죄를 발각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졌는데, 과학수사는 현대 형사소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음
- 환경범죄의 수사 및 성립 여부 판단 과정에서는 과학적 측정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환경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환경범죄 단속에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장치인 TMS(Tele-Monitoring System)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해당 장비는 설치 및 연간 관리에 고비용이 소요되며, 배출사업자가 측정지점이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이동식 측정망 구축이 가능하고 그 운용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드론

을 환경사범 단속이나 수사에 이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대기오염센서를 부착하거나 고화질 영상촬영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드론에 의한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기업체와 개인은 프라이버시의 기대가능성 측면에서 차등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드론을 이용한 행정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인바, 법집행기관의 드론 사용은 법원의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임

■ 재판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 환경범죄의 재판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 전문가의 증언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면서 환경범죄라는 전문분야에서의 논쟁은 국내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기도 함
-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도 저명한 국외 전문가의 증언을 직접 듣고자 하는 요구가 생기는데, 그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제약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이 논의될 수 있음
-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국외전문가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강화되어야 하는바, 향후 국제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원격영상방식에 의한 수사와 증인신문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환경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야 함

- 또한 과학적·체계적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인공지능도 활용될 수 있는데, 환경범죄의 발생 시 인공지능을 통해 그 오염원의 출처가 파악될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

KIC ISSUE PAPER 2016년 제16호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발행인 | 김진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 575-5282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쇄처 | (주)현대아트컴
(02) 2278-4482
